

「결합상품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

아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객님께서서는 T world(www.tworld.co.kr) 내 이용약관전문을 확인하시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상세한 이용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계약의 성립

(신청) 이용자는 영업점 방문, 전화(1600-2000), 인터넷(www.tworld.co.kr)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결합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업형 결합서비스 등과 같은 일부 서비스는 신청채널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성립) 이용자가 이용계약(신청)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 또는 제휴사에 청약해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관련 청약 증빙자료(청약서, 구비서류, 녹취 등)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서 교부) 이용자의 청약에 대한 회사 및 제휴사의 승낙은 이용계약서(신청서) 교부로 합니다.

(신청제한) 타인명의 사용, 허위서류 첨부, 결합 대상서비스 정지, 개별 서비스 약관에서 승낙 제한 상태인 경우

2. 계약의 변경

- 이용자는 결합서비스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이용자의 요금 미납, 개별 약정사항 위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약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결합서비스의 제공

- 결합서비스 가입기간 동안 제공되는 요금할인 등의 혜택은 <별표 1>과 같이 제공합니다

4. 할인반환금

- 이용자는 이용자의 사유로 결합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결합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제공받은 결합할인 및 혜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가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는 경우 이 약관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할인반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할인 반환금 부과 기준을 <별표 1> 및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다만, 경품은 가격을 명시한 경우 12개월 내에 할인 반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지급내용, 가액, 위약금 부과조건 및 산정기준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할인반환금 산정방식)

- 할인반환금을 산정하는 할인금액의 경우, 결합상품별, 약정기간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표 1>을 참조 바랍니다.

- 산정방식 예시 ('16. 3. 31일 이전 가입고객)

: 3년약정으로 100M 인터넷 + IPTV + 인터넷전화 결합 후 월 2천원의 홈결합 할인을 받은 뒤 15개월차에 해지시, 인터넷 결합할인에 대한 위약금

* 산정식 : 이용기간 X (결합 약정기간 할인금액 - 결합 이용기간 할인금액)

(약정기간 할인금액은 1년 미만은 0원, 2년 미만은 1년 약정, 3년 미만은 2년 약정 할인금액을 적용)

* 할인반환금 : 이용기간(15개월) X (약정기간 할인금액(2,000원) - 이용기간 할인금액(500원)) = 22,500원

- 산정방식 예시 ('16. 4. 1일 이후 가입고객)

: 3년약정으로 100M 인터넷 + IPTV + 인터넷전화 결합 후 월 2천원의 홈결합 할인을 받은 뒤 16개월차에 해지시, 인터넷 결합할인에 대한 위약금

* 산정식 : $\sum [\text{이용기간별 총 할인금액} \times (1 - \text{이용기간별 할인율})]$

* 할인반환금 : $(1\sim 8\text{개월 이용기간별 총 할인금액}(16,000\text{원}) \times 100\%) + (9\sim 10\text{개월 이용기간별 총 할인금액}(4,000\text{원}) \times 90\%) + (11\sim 12\text{개월 이용기간별 총 할인금액}(4,000\text{원}) \times 90\%) + (13\sim 16\text{개월 이용기간별 총 할인금액}(8,000\text{원}) \times 35\%) = 26,000\text{원}$

[이용기간별 할인율]

구분(개월차)	1~8	9~10	11~12	13~16	17~20	21~24	25~28	29~32	33~34	35~36
1년약정	0%	75%	105%							
2년약정	0%	50%	50%	105%	130%	140%				
3년약정	0%	10%	10%	65%	90%	100%	115%	150%	180%	270%

※ 약정시작일 변경 등의 사유로 누적 할인반환금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해당 할인반환금은 0원으로 합니다.

5. 정지

(이용정지) 회사는 결합서비스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요금을 미납했을 경우에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용정지 기간은 결합서비스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시정지) 이용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일시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시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으며, 일시정지 기간은 결합서비스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결합서비스의 이의신청

- 회사가 청구한 결합할인에 이용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조사 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손해배상

(책임소재) 결합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역무 이외의 결합서비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서비스 제공사업자(제휴사 포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회사는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결합서비스 손해배상의 기준 및 범위는 서비스별 개별약관에 명시된 손해배상 기준을 따릅니다.

8. 해지

- 이용자는 결합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경우 <별표 2>의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영업점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설치 장소 이동, 양도/승계한 경우 등의 사유로 결합서비스의 일부가 변경 또는 해지되어 이용자의 잔여 서비스로 결합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으로 결합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사정변경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일부 서비스 해지 시 고객이 잔여기간 동안 해지 대상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들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기존의 결합상품 할인율을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또는 대체 가능한 서비스로 제공 시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잔여 서비스로 구성 가능한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